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2. 22.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임현주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91호

다. 제출일자 : 2023. 02. 09.

라. 회부일자 : 2023. 02. 13.

2. 제안이유

- 금연구역 범위가 좁을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계선 경계면 10미터 구역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2. 09. ~ 2023. 02. 14.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계면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을 추가하는 것임,
- 금연구역 지정에 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직접 금연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장소¹⁾(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법 제9조제7항)²⁾를 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위임하는 두 체계로 관리되고 있음.

□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경계면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1) 법률에서 직접 규정 : 공용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공항.부두.역.터미널 등, 공연장,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의 경계 10미터

2) 성부구 조례 규정 : 도시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

그러나 초·중·고교의 경우 여전히 출입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 주변도 경계 기준으로 바꾸어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한편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제도개선안 주문·의결을 통해 ‘학교 등 시설 밖 금연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 및 초·중·고등학교 경계 밖 30미터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초구는³⁾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을 추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대문구⁴⁾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설의 경계면으로부터 3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현재 법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계면 반경 10m이내까지 금연구역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3) 서울시 조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서초구 조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하며 사유지는 제외한다)

4) 서대문구 조례 :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우리구 금연구역 총 현황 : 10,658개 (2022년 10월 31일 기준)

구 분		금연시설 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31.기준)
누 계		10,527	10,480	10,485	10,566	10,658
국민건강진법	청사	67	63	63	57	59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15	113	113	108	109
	대학교	7	7	7	7	7
	의료기관, 보건소등	525	526	526	539	532
	어린이집	296	296	296	243	209
	청소년활동시설	9	6	6	10	10
	도서관	54	53	53	52	65
	어린이놀이시설	372	382	382	393	378
	학원	462	463	463	470	435
	교통관련시설(차량 포함)	860	845	845	833	833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412	413	413	327	225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1000m ² 이상)	140	145	145	256	357
	공연장	4	4	4	2	4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11	11	11	11	9
	관광숙박업소	7	5	5	5	4
	체육시설업	378	373	373	378	423
	사회복지시설	247	276	276	285	316
	목욕장	32	29	29	26	24
	게임제공업소(PC방 등)	166	155	155	113	87
	음식점	5,053	5,067	5,065	5,239	5,379
	만화대여업소	9	9	9	8	8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	-	-	-	-
	공동주택	2	4	11	14	17
	유치원 10m 이내	-	50	50	46	46
	어린이집 10m 이내	-	296	296	243	209
	소 계	9,228	9,591	9,596	9,665	9,745
서울시조례	중앙버스차로	10	10	10	10	10
	지하철출입구	63	63	63	63	63
	소 계	73	73	73	73	73
성북구조례	도시공원	47	48	48	53	61
	버스정류소(마을버스 포함)	737	616	616	628	632
	거리	3	3	3	3	3
	통학로	-	2	2	2	2
	하천	2	4	4	4	4
	학교절대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0m)	115	113	113	108	108
	전통시장(돈암, 장위전통, 돌곶이 시장)	-	3	3	3	3
	지역아동센터 10m (2019년부터)	-	27	27	27	27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10m(2018년까지)	322	-	-	-	-
	소 계	1,226	816	816	828	840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